

# 2023년도 제2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21.(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3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61건(안전번호 제2023-174866호~176826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74866호~174868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74869호~174899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74900호~174919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74920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74921호~17682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6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4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232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반하람 주임: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 하였음. 제1호 안전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 내지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79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 내지 3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이 '■■■■■' 및 '★★★★'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이며, 총 60건임.

(순번 18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3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4번 내지 34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번 내지 3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 내지 3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번 내지 5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49건임.

(순번 38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십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5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십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35번 내지 54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5번 내지 5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 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5번 내지 5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5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10건임.  
(순번 5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네이버 블로그에 2023. 09. 09.부터 국내 채널에서 방영중인 일본 애니메이션 ‘♠♠♠♠♠ ♠♠’를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영상저작물의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파일을 제작 및 전송한 행위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광고 배너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영리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시자가 해당 자막파일이 불법 복제된 영상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이라는 점 및 자막파일 전송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한바,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2023. 9. 21. 현재 300건이 넘는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므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게시자가 본인이 번역한 자막을 게시한 사안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만 전송권의 침해에도 해당하는지는 의문임.
- B 위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함. 전송권의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자체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 파일은 2차적저작물로 독립된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원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는 명백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반하람 주임: 관련 내용 검토해서 추후 검토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리 목적의 게시물은 아니지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문이 없는 사항이며,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사용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5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6번 내지 1,96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668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예능 'SNL 코리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8번은 웹하드에서 예능 'SNL 코리아' 시즌4의 9화 전체분량을 1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16.에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공개한 예능 프로그램임.  
(드라마 '유괴의 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5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유괴의 날'의 1화 전체분량을 1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13.부터 ENA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영화 '보호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61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보호자'의 1시간 28분 전체분량을 3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8. 15.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56번 내지 1,96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56번 내지 1,961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6번 내지 1,96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74866호~17486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74869호~17489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74900호~17491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74920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74921호~17682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2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5.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